#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60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용혜인・이수진・조 국

한창민 · 김영환 · 복기왕

황명선 • 염태영 • 정진욱

소병훈 · 박수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 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

18년 7억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갈 제도적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 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 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안 제1조).
- 나.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 세배당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8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등에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탄소세배당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3 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과 탄소세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소세배당의 수급 및 탄소세배당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탄소세배당"이란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2. "수급권"이란 탄소세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3. "수급권자"란 탄소세배당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배분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보호)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제4조(탄소세배당 수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탄소세배당 수 급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탄소세배당 수급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제2장 탄소세배당의 신청 및 지급

- 제5조(탄소세배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탄소세배당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 1. 대한민국 국민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 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
  - ② 탄소세배당액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금액을 탄소세배당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탄소세배당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탄소세배당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세배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탄소세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에게 탄소세배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탄소세배당의 지급 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탄소세배당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세배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조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탄소세배당 지급을 신청한 수급권자(이하 "탄소세배당지급신청자"라 한다)에게 수급권 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

- 여 필요한 경우 탄소세배당지급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3.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탄소세배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미지급 탄소세배당의 청구) 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탄소세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미지급 탄소세배당을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탄소세배당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

- 제10조(탄소세배당의 지급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2.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 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탄소세배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탄소세배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탄소세배당의 환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탄소세배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탄소세배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 1.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 배당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에 따라 탄소세배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탄소 세배당이 지급된 경우 등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4장 탄소세배당특별회계

-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그 밖의 수입금
-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1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장 보칙

- 제19조(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 탁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